

#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小考

睦 延 均

〈KORSTIC 特許情報部長〉

있는 言語上의 障害도 輕減될 수 있을 것이다.

## 1. 머리말

全世界的으로 特許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 수가 120余個國으로 이들 國家들로부터 特許公報類를 發行하여 權利附與의 內容과 그의 技術內容을 公表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公表되는 內容에 대해서는 各國마다 制度的으로 特許分類를 設定하고 分類의 附與를 義務化하고 있어서 特許文獻의 整理, 檢索에 重要な 役割을 하게 된다. 그런데 世界各國에서는 自國特有의 特許分類를 使用하고 있어서 近來와 같이 技術交流의 國際化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外國特許文獻檢索의 必要性이 增大하여 가고 있어서 많은 不便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各國에서는 國際적으로 統一된 特許分類를 使用하여야 될 것이 要望되어 이와 같은 實情을 감안하여 世界各國이 共通적으로 採用될 수 있는 目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國際特許分類(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로서 現在 프랑스, 西獨, 日本, 소련,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등의 國家들은 IPC를 唯一의 特許分類로 使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밖에 50여개국들이 自國의 特許分類와 併記하고 있거나 혹은 IPC만을 使用하기 위한 準備段階에 있다.

이와 같이 IPC를 使用하게 됨으로써 世界各國의 特許文獻에 대한 共通言語에 의한 檢索이 可能하여질 것이며, 各國間에 큰 부담이 되고

## 2. IPC의 由来

經濟, 社會, 文化 등의 分野에서 歐州의 統合을 目的으로 하는 歐州評議會(The Council of Europe)가 1949年 8月 3日에 正式으로 發足, 그후 同諮問會議(The Consultative Assembly)에서 歐州特許廳設立에 대한 計劃案을 提出하게 되었는데, 이 問題의 勸告를 研究하여 審議結果를 報告토록 하기 위해 全締約國의 政府에 의한 特許專門家委員會(The Committee of Experts on Patents of the Council of Europe)를 創設하게 되었고, 同委員會에서 歐州特許廳設立計劃案의 審議過程에 共通分類體系의 作成作業을 推進하기 위한 作業部會를 만든 것을 決定하고, 이 作業部會의 最初會合이 1952年 1月 15日 Strasbourg에서 開催되었다. 이 會合에서는 共通分類體系를 作成함에 있어서 利用者의 要求를 만족케 할 수 있는 機能別 分類 및 產業分野別내지는 用途分類가 同時에 可能토록 하기 위한 結論을 얻게 되었고 1952年 7月에 特許專門家委員會와 作業部會와의 合同會合에서 IPC에 관한 草案이 審議되고, 또한 各締約國에서는 義務적으로 國際特許分類를 採用토록 하여 分類體系의 發展을 도모토록 할 것을 決定, 이를 받아들여서 「特許의 國際分類에 관한 歐州條約」(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atents for Invention)이

表 1. IPC第3版(Int. CI<sup>3</sup>)의 分類項目數(構成)

Section	Class數	Sub-class數	Main-group數	Sub-group數	全group數
A	15	80	1,017	5,487	6,504
B	34	161	1,702	11,974	13,676
C	19	89	1,088	9,649	10,737
D	8	38	343	2,195	2,538
E	7	30	321	2,676	2,997
F	17	97	1,019	5,837	6,856
G	13	75	622	5,238	5,860
H	5	47	481	5,789	6,270
計	118	617	6,593	48,845	55,438
Int. CI <sup>2</sup> 와의 比較	+ 2	+ 3	+124	+ 3,878	+ 4,002

1954年12月19日에 調印되고 1955年 8月 1日을 기하여 發効하게 되었으며, IPC의 作成作業이 進行되어 1968年 9月 1日에 國際特許分類 第1版이 發効하게 되었다.

그리고 IPC를 歐州評議會로부터 分離시켜 効率的인 世界規模로서 運營하여 나아갈 것을 目的으로 하여 1971年 3月24日에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Strasbourg協定」(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PC)이 調印되고 1975年 10月 7日부터 發効하게 되었다. 이 協定에 의해 IPC 同盟(IPC Union)이 創設되었으며, 이 同盟의 發足과 더불어 IPC에 관한 業務의 執行權限은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갖게 되었다.

### 3. IPC의 改正

時代的인 變遷에 따라 技術의 內容도 變革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特許分類는 늘 이에 關聯하여 技術發展에 適合하게끔 改正되지 않으면 特許分類의 機能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改正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點을 감안하여 IPC에서는 5年마다의 改正期를 定하고 그의 改正을 檢討하고 있다.

現行 IPC는 第1回의 改正期를 거쳐 1975年 1月 1日부터 第二版「略號=Int CI<sup>2</sup>」이 使用되었으며, 第2回의 改正期를 거쳐 1980年 1月 1

日부터 第三版「Int CI<sup>3</sup>」이 使用되기 始作하였다.

IPC의 改正作業은 作業部會(Working Group), 運營委員會(Steering Committee), 專門家委員會(Committee of Expert)의 3段階를 거쳐서 實施되어 왔다.

現行 IPC는 第1回의 改正期를 거쳐 1975年 1月 1日부터 第二版「略號=Int CI<sup>2</sup>」이 使用되었으며, 第2回의 改正期를 거쳐 1980年 1月 1日부터 第三版「Int CI<sup>3</sup>」이 使用되기 始作하였다.

IPC의 改正作業은 作業部會(Working Group), 運營委員會(Steering Committee), 專門家委員會(Committee of Expert)의 3段階를 거쳐서 實施되어 왔다.

즉 加盟國으로부터 必要條件에 의해 提出된 改正案은 먼저 作業部會에서 技術的인 觀點을 檢討하게 되며, 여기서 採擇된 內容은 그다음 運營委員會에서 大局的인 觀點으로 檢討를 하여 採擇된 改正案은 最終적으로 專門家委員會로 보내 審議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最終的인 審議結果에 의해 採擇된 改正案은 國際事務局이 同盟國의 當局으로 通告하게 됨으로써 6個月後에는 IPC의 改正으로서 發効하게 된다.

이 改正作業에 있어서 IPC同盟의 加盟國은 自國이 멤버로 되어 있는 作業部會 또는 各 委員會에 出席하여 IPC改正作業에 參加를 하게 된다. 그런데 1979年以後는 이와 같은 機構의

一部分가 修正되어 IPC改正의 檢討는 「特許情報에 관한 常設委員會」에서 취급하기로 되었다.

#### 4. IPC의 構成

##### 1) IPC의 体系와 表記法

特許의 對象이 되고 있는 全産業分野를 技術的 見地에서 A~H의 Alphabet大文字로 된 8個의 Section과 Section title 그리고 Section을 區分한 Subsection, 이 Subsection은 Subsection title만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Subsection을 區分하기 위해 Class와 Subclass가 從屬되어 있고, Subclass를 細分하기 위해 Main-group과 Subgroup으로 된 2個의 種目으로 体系를 이루고 있다(表 1 參照).

다음은 Section과 Subsection의 區分을 나타낸 表이다.

Section	Subsection
A 生活必需品	農 業 食料品 및 담배, 個人用品 및 家庭用品 健康 및 娛樂
B 處理·操作	分離의 混合 成 形 印 刷 運 輸
C 化學 및 冶金	化 學 冶 金
D 纖維 및 종이	纖維 및 그밖에 分類되지 않는 可動性 材料 종 이
E 固定構造物	建造物 鑛 業
F 機械工學; 照明; 加熱; 武器; 爆破	機關 및 펌프 工學一般 照明 및 加熱 武器; 爆破
G 物理學	機 器 原子核工學
H 電 氣	電 氣

國際特許分類表中에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必要事項의 指示, 用語의 定義, 規則 등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事項들이 記載되어 있다.

##### 用語解説

國際特許分類表의 展開用語中 자주 使用되고 있는 44個의 用語에 대해 그의 意味 또는 使用方法의 統一을 기하기 위해 解説한 것으로서 分類表의 最初部分에 記載되어 있다.

##### 서브클래스內的 색인(Sub-class Index)

Sub-class內에 展開되고 있는 事項들을 간단히 把握하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는 것으로서, 分類体系의 一部分을 構成하거나 分類範圍를 規定하는 것은 아니다.

##### 注(Notes)

展開되고 있는 內容을 보다 더 明確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分類附與方法, 優先, Last Place Rule 등을 指示하거나 用語의 意味를 定義하고 있다.

##### 分類範圍에 대한 注意(Notes on Scope)

分類表의 Sub-class 바로 다음에 記載되어 있으며, 주로 그 Sub-class가 커버하고 있는 範圍를 說明하고 있다.

##### 標題語(Guide Heading)

數個의 Main-group을 整理하여 이들이 對象으로 하고 있는 事項들을 簡潔하게 表現키 위해 整理된 用語로서 Main-group의 바로 上端에 表示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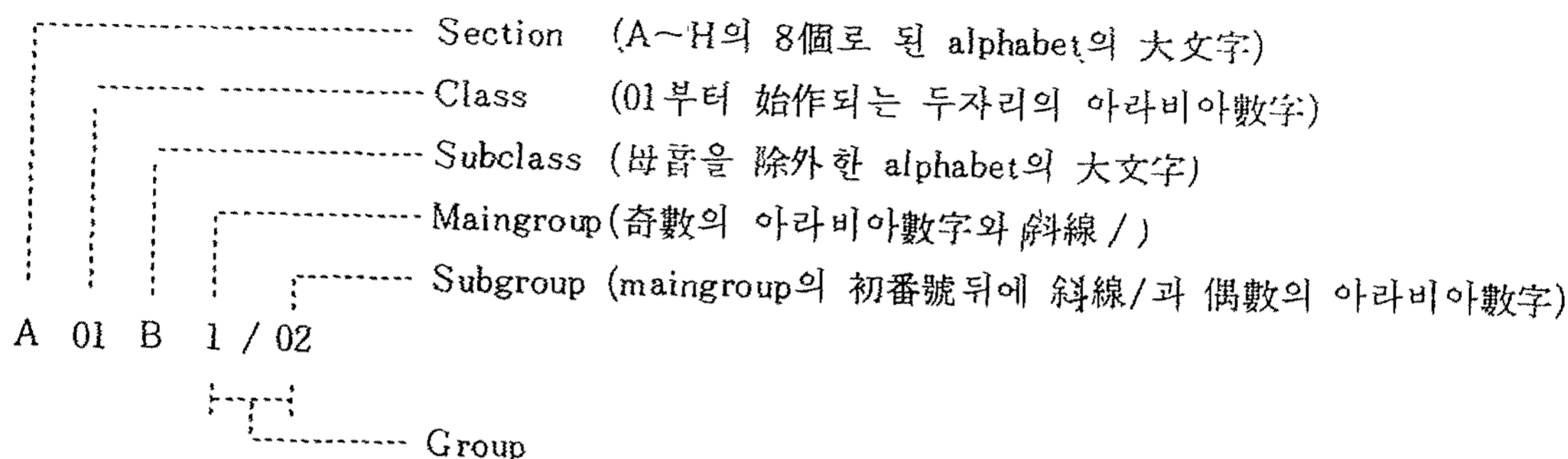
##### 說明(Explanatory Notes)

Section 혹은 Class 등의 比較的 上位인 分類項目部分에 記載되어 있으며, 一般的으로 알아두어야 할 豫備知識, 用語의 定義 등을 說明하고 있다.

##### 參照(Reference)

Class, Sub-class, Guide-heading 또는

〈IPC의 表記例〉



Group의 展開用語에 바로 이어서, 괄호로 묶어 說明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機能을 갖고 있다.

- ① 分類範圍의 限定
- ② 優先
- ③ 案内

Last Place Rule

IPC의 分類表中 一定範圍內에 該當하는 分類項目이 여러 개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중에서 展開順序가 最後 (Last Place)의 分類項目인 것을 採用하여 分類記號를 부여토록 하는 規則으로서 이 규칙이 適用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要旨가 明確히 指示되고 있다.

例 C 11 D

Note In sub-groups 9/06 to 9/42, a compound is always classified in the last appropriate place.

(Sub-group 9/06~9/42에 있어서의 化合物은 항상 最後의 適切한 個所에 分類한다).

First Place Rule

Last Place Rule과는 反對인 경우로서 該當하는 分類項目이 여러 개 있을 경우 展開順序의 最初 (First place)의 것을 採用하여 記號를 부여토록 하는 規則으로서 Sub-class에서의 適用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例 C 05

Explanatory Notes

(1) An ingredient in a mixture of fertilizers, or single fertiliser which contains

more than one of the chemical elements on which the subdivision into sub-classes is based, is classified only in the first of the appropriate sub-classes. Thus, a nitrophosphate or an ammoniated superphosphate is classified in C 05 B but not in C 05 C, magnesium phosphate is classified in C 05 B but in C 05 D, and calcium cyanamide in C 05 C but not in C 05 D.

(肥料混合物中的의 한 成分 혹은 Sub-class에 의 網分化의 基礎가 되는 化學元素를 2種以上 含有하는 單一肥料는 該當 Sub-class의 最初에 限해 分類한다. 그러므로 나이트로포스페이트 혹은 암모니아화 過磷酸石灰는 C 05 B로 分類되나 C 05 C로는 分類하지 않으며, 磷酸마그네슘은 C 05 B로 分類되나 C 05 D로는 分類하지 않고 또한 칼슘시아나마이드는 C 05 C로는 分類되나 C 05 D로는 分類하지 않는다)

2) 分類부여의 對象이 되는 情報

IPC에서 情報를 分類하는 第一의 目的은 整理, 檢索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必要한 경우 整理된 狀態에서 有用한 情報를 檢索코자 할 때 어떠한 것이라도 錯誤없이 檢索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IPC의 記號부여에 있어서도 역시 이에 準하여 慎重하게 實施되어야 한다.

먼저 特許明細書에 IPC의 記號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明細書를 分析하여 對象으로 하는 情報를 抽出해 내야 된다. 그 對象으로 하는 情報는 發明單位, 參考情報, 相補情報의 3가지 種類로 區分하게 된다. 이들의 對象情報中 發明單位에 대한 分類부여는 義務的이며, 參考情報와 相

表 2.

A 01 N 25/00~65/00	.....	Agricultural chemicals
A 61 K 31/00~47/00	.....	Medicinal preparations
C 05	.....	Manufacture of fertilisers
C 07 D	.....	Heterocyclic compounds
C 08 F 210/00~297/00	...	Copolymers, Graftpolymers, Block polymers
C 08 K	.....	Use of Inorganic or non-macromolecular organic substances as compounding ingredients
C 08 L	.....	Compositions of macromolecular compounds
C 11 D	.....	Detergent compositions;

補情報에 대한 分類부여는 任意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1) 發明單位 (Invention Unit)

發明單位란 特許明細書에서 發明이 具現化하고 있는 自体, 즉 發明의 目的과 效果를 이룩하는 한편 發明의 構成에서 權利情報로서 主張이 되고 있는 事項 全部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特許請求權範圍가 發明單位를 構成하게 된다.

(2) 參考情報 (Supplementary Information)

特許明細書의 內容中에는 發明을 構成키 위해 前述한 發明單位以外에도 有効하게 利用되는 技術情報가 包含되어 있다.

즉 發明單位는 아니나 技術적으로 注目하여야 할 事項의 技術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위 參考情報라 말한다.

(3) 相補情報 (Complementary Information)

特許明細書에서 採擇된 發明單位가 어떠한 要素로서 構成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相補情報이다.

相補情報는 現在 表 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化學關係의 7個 Sub-class에 限하여 適用하고 있다. 이들의 Sub-class에는 分類부여를 整理하기 위해 Last Place Rule, First Place Rule 또는 主成分規則의 適用이 義務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相補정보를 採用하는 分野에는 分類表中의 「Note」 등에서 要旨가 說明되고 있다.

3) 分類記號의 記載方法

IPC의 記載順序는 發明單位, 參考情報, 相補정보의 順으로 明確히 區分하여 記載하게 된다.

먼저 發明單位에 있어서 1個의 發明單位에 複數의 分類記號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複數의 發明單位에 對應하여 複數의 分類記號가 選擇된 경우 對應하는 分類記號를 모두 二重斜線(//)의 앞에 記載하며, 이 경우 가장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分類記號를 제일 먼저 記載하고 그다음은 順次的으로 記載한다.

發明單位가 記載된 다음 參考情報가 있을 경우 二重斜線의 바로 뒤에 記載한다.

그다음 相補정보는 參考情報에 뒤이어 괄호로 묶어서 記載한다. 相補정보는 반드시 發明單位와 關聯시켜서 記載해야 한다.

다음에 前述한 內容을 좀더 具體적인 例를 들어 記載過程을 說明코자 한다.

發明單位 2個 C 08 F 210/02,  
 參考情報 1 " C 08 F 255/04//  
 相補情報 3 " A 63 C 5/12  
 (C 08 F 210/02,  
 210/06,  
 214/06)  
 (C 08 F 255/04,  
 214/06)

① 發明의 重要性을 고려하여 가장 관련이 깊은 發明單位의 分類記號 C 08 F 210/02를 제일 먼저 記載한다.

② 나머지 發明單位에 대한 記號 C 08 F 255/04를 코머(,)로서 區分 되어 記載한다.

③ 그다음 參考情報과 相補정보가 있으므로 二重斜線(//)을 하고

④ 參考情報에 관한 分類記號 A 63 C 5/12를 記載한다.

⑤ 그다음은 相補정보를 記載하게 되는데 이는 發明單位와 關聯시켜 다음과 같은 順序로 記載한다.

a. 먼저 괄호〔〕를 열고

b. 最初의 發明單位記號 C 08 F 210/02를 記載하고 코머(,)를 한 다음 이에 대한 相補정보 2個가 解當되는데, 이것은 Sub-class까지는

記號가 同一하므로 同一한 部分은 省略하고, 다만 group部分인 210/06, 214/06만을 記載하고 괄호를 달는다.

c. 또하나의 發明單位인 C 08 F 255/04에 대해서도 解當되는 相補情報 1個가 있으므로 前述한 a, b의 順序와 같이 記載한다.

## 5. CAPRI 計劃

### 1) 計劃의 目的

各國에서 發行되고 있는 特許資料들에 있어서 現在 IPC를 附與하고 있기는 하나, 많은 Search file이나 資料들에 있어서 部分的으로는 各國獨自의 分類體系에 따라 構成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資料나 Search file에 있어서 앞으로는 IPC를 適用하기가 容易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IPC附與以前에 蓄積된 資料나 Search file을 IPC에 의해 整理한다는 것은 困難한 問題로서, 이를 實踐하기 위해서는 많은 技術關係의 人力과 資金負擔이 뒤따르게 될 것이며, 또한 各國의 特許廳이나 Search機關들이 IPC로서 再分類한다 하더라도 各國에서는 同一한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많은 無理한 重複性의 作業을 遂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近來와 같이 特許分野에서 國際間의 協力이 高潮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特許協力條約(PCT=Patent Cooperation Treaty) 및 이條約에 의한 많은 나라의 Search 機關에서 國際的인 Search system의 確立이 要望되고 있는 이때 再分類에 관한 問題의 國際的인 解決은 시급한 課題로서 등장하게 되어 1975年 9月 第 11回 파리同盟執行委員會에서 WIPO로부터 「國際特許分類에 의해 再分類된 特許文獻의 컴퓨터管理에 관한 最終的 草案」 CAPRI(Computerized Administration of Patent Documents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IPC)計劃이 提出되었으며, 이것이 檢討되어

① WIPO의 事務局에 INPADOC과 必要한 協定을 締結할 것을 委任하는 일

② 再分類의 對象을 INPADOC과 協力特許廳과의 協力下에 計劃을 時急히 遂行하여 될 수 있는 限 빨리 特許協力條約(PCT)에서 規定하는

Minimum Documentation의 範圍까지 再分類할 것 등을 勸告하게 되었다.

따라서 CAPRI計劃은 IPC에 의한 再分類問題의 實質的인 解決策으로서 다음과 같은 目的을 두고 있다.

① 特許文獻에 IPC를 附與하는 業務를 各國 特許廳이 割當하여 實施한다.

② 再分類된 데이터를 중앙에 수집하여 컴퓨터化된 Data Bank를 設立한다.

③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各國間의 重複을 避하도록 하여 各國 特許廳 및 Search機關이 이 Data Bank에서 必要로 하는 形態로서 데이터의 提供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의 Data Bank는 INPADOC(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內에 중앙 Data Bank를 創立하게 되었다.

### 2) CAPRI計劃에 의한 再分類對象

WIPO에 의한 CAPRI計劃의 全體的인 調整 및 管理下에 다시 WIPO와 INPADOC間에 締結된 合意事項을 基礎로 하여 INPADOC은 國際特許分類로서 分類된 特許資料의 데이터뱅크를 創設하게 되었으며, CAPRI計劃에 의해 수집되는 特許資料는 다음과 같다.

① 特許協力條約規則34에 規定된 Minimum documentation의 特許資料

② Minimum documentation以外的 資料일지라도 INPADOC으로 Machine readerble形態로서 送附되는 特許資料

③ 特許協力條約規則34.1(C)(VI)에 規定된 英語, 프랑스語, 獨語로 되어 있는 特許資料도 데이터뱅크에 入力한다.

## 6. 맺는 말

最近에 이르러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傾向과 더불어 이에 발맞추어 各國은 國際特許分類의 專用을 서두르고 있으며 모든 特許資料는 IPC에 의해 分類, 整理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에 보조를 같이 하고 IPC의 効率的인 運用과 基本知識을 넓혀서 記號부여로부터 整理, 檢索에 이르기까지의 보다 더 원활한 活用을 위한 體系化를 구축하고, 特

許權에 의한 技術活用을 도모하여 技術報國으로서의 發展에 이바지하여야 될 것이다.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文獻으로는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韓譯版, 英語版, 日語版), IPC를 보다 쉽게 理解하기 위한 IPC Hand Book, 國際特許分類부여의 運用基準(日本特許廳公報 53-97), 韓國特許分類表對 國際特許分類 對照表, 特許分類索引(가나

다順으로 된 技術用語에 의한 IPC와 LPC對照表) 등을 비롯하여 定期刊行物인 特許管理(日本特許協會刊), 發明(日本發明協會), World Patent Information(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WIPO) 등에서 IPC關係의 專門的인 記事가 連載되고 있다(文獻; KORSTIC 所藏).